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1999. 6.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경 제 과>

- 상품권법의 폐지('99. 2. 5)에 따른 조문정비
 - 상품권관리와 관련된 14개사무 폐지

<보 건 과>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일부 업무가 시·군·출장소에 기 위임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급자 교육 업무도 위임

<물 관리과>

- 지하수법의 개정('99. 3. 31)에 따른 조문 정비
 - 지하수업무와 관련된 일부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등 15개사무 조문삭제

<축 산 과>

-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 위임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관리업무 14개사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의사법개정('99.3.31)에 따른
조문정비

<교통정책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방법 변경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무 등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기업지원과>

- 별표6의 산업단지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 민간위탁
 - 부용지방산업단지 :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 대소지방산업단지 :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근거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21호”를 “제2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과 소관 제48호,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과	48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법 제55조의3 동법시행규칙제24조의2
	49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교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6조의3 동법시행규칙제36조의2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물관리과	1	○지하수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이용실태조사(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나.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시료채취후 봉인 및 검사결과의 조치	지하수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제2항, 제3항,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22호 내지 제35호”를 “제23호 내지 제36호”로 하고, 제9호, 제13호, 제20호,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9	○소독 등의 실시명령·기록·확인등	가축전염병예방법제6조
	13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수의사법 제3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20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2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무 (축산물 등의 수거검사 사무 제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나.영업의 허가와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	동법 제22조
		다.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22조
		라.영업의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수리	동법 제23조
		마.품목제조보고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의 처리	동법 제25조
		바.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동법 제26조
		사.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동법 제27조
		아.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동법 제28조
		자.시설개수명령	동법 제35조
		차.축산물의 압류·폐기 또는 회수 처분에 관한 사무	동법 제36조
		카.공표명령	동법 제37조
		타.영업소의 폐쇄 조치	동법 제38조
파.청문에 관한 사무	동법 제43조		
하.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7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교통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정책과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등 다.자동차신규등록,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봉인등 라.자동차변경·이전,말소등록의처리 및 수출이행여부신고와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마.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등록사항 확인명령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아.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지정, 개선명령,지정취소,사업정지명령 자.자동차에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 정지명령 차.자동차의 강제처리 카.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타.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파.자동차구조 및 장치 변경승인 하.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 검사 명령	자동차저당법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동법제8조,제9조, 제10조,제18조 동법 제11조,제12조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제20조,제2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교통정책과	3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처리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마. 자동차관리법제38조제3항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사. 보고명령 및 검사 아. 단속 자.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차.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 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72조 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84조
	4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 실시 다.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5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 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이전·개정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제3조, 제5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정책과		다.등록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 제6조	
		라.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마.등록번호표부착,봉인과 표식 및 새김명령	동법 제8조	
		바.등록번호표의 반납	동법 제9조	
		사.식별곤란 등록번호표의 재새김명령등	동법 제11조	
		아.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8조의 2	
		자.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차.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 제17조	
		카.보고 및 검사	동법 제35조	
		타.과태료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파.건설기계저당권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6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및 인가받은 사업의 변경, 공사기간의 지정	삭도궤도법제7조,제8조 제1항	
		나.도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원상회복	동법 제11조,제12조	
		다.준공검사	동법 제13조	
		라.시설변경의 인가	동법 제14조	
		마.사업개시 등의 신고	동법 제15조	
바.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 상속 신고 수리	동법 제17조, 제17조의2			
사.사업의 휴지신고 수리	동법 제18조			
아.삭도·궤도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	동법 제19조제1항			
자.궤도 접속지에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명령	동법 제25조제2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정책과		차.개선명령	동법 제28조 제1항
		카.사고의 보고	동법 제29조
		타.필요사항의 보고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지시	동법 제30조
		파.임원의 해임명령, 시설 또는사업의 관리명령	동법 제32조
		하.전용삭도 등에 대한 준용사항 (공사시행의 허가,준공검사,시설변경의 인가,사업개시신고수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휴지·상속신고수리,사고자의 보고, 보고·검사, 수수료)	동법 제34조
	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9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
		나.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
		다.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10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11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
12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업의 면허 나.공사시행의 인가등 다.공사의 완성 라.사용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제4항 동법 제4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정책과	13	마.사용약관 인가 바.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터미널의 관리 자.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차.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카.사업개선 명령 타.사용명령 파.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하.면허의 취소 거.과징금 처분 너.청문 더.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조합 설립 러.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머.정관변경 등의 명령 버.재정지원,조합감독 서.공사시행인가,시설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통보 ○기계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나.기계식 주차장 검사필증 및 사용 금지표지의 교부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제3항 동법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79조 동법 제77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1조,제59조 동법제49조제3항,제4항 주차장법제19조의9 제2항 동법제19조의10 제1항

별표6의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위탁기관중 제4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단지별	위임·위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4	부용지방산업단지	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6	대소지방산업단지	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동법 제3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제과	1	(생 략)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상품권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하(생략)						
	3-21	(생 략)			2-20	(현행과 같음)		
보건과	1-47	(생 략)		보건과	1-47	(현행과 같음)		
		(신 설)			48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법 제55조 의3, 동 법시행 규칙제2 4조의2	
		(신 설)			49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교육	향정신 성의약 품관리 법제36 조의3, 동법시 행규칙 제36조 의2	
물관리과	1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사항 가.- 사(생략) 아.- 자 (생 략) 차 - 러 (생 략)		물관리과	1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의 권한 (삭 제) 가-나(현행과 같음) (삭 제)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축산과	1-8	(생 략)		축산과	1-8	(현행과 같음)		
	9	○비영리법인 동물병 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수의사법제 17조제4항		9	○소독등의 실시 명령 기록 확인등	가축전 염병예 방법제6 조	
	10-12	(생 략)			10-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13	○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수의사법 제33조	축산과	13	○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수의사법 제33조
	14-19	(생략)			14-19	(현행과 같음)	
	20	○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20	○ 도축장의 도살 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제2항
	21	(생략) (신설)		21	(현행과 같음)		
				22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무 (축산물 등의수거검사사무 제외) 나. 영업의허가와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 다.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라. 영업의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수리 마. 품목제조보고 및 중요한사항의 변경보고의 처리 바.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사.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아.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자. 시설개수명령 차. 축산물의 압류·폐기 또는 회수 처분에 관한 사무 카. 공표명령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9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7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정책과	22-35	(생략)		교통정책과	23-36	타.영업소의 폐쇄 조치 파.청문에 관한 사무 하.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현행과 같음)	동법 제38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7조				
						1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저당법 제3조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현행과 같음)	자동차저당법 제4조
						2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등	자동차관리법 제4조	나.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제7조	
						3	○자동차신규등록 및 등록의 거부,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포함)	동법제8조, 제9조, 제18조 제2항	다.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등 (삭 제)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동법제10조 제2항	라.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여부신고와 말소사실증명서 교부 (삭 제)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5	○변경등록의 처리	동법제11조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16조	
						6	○이전등록의 처리	동법제12조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17조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동법제13조	마.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동법 제14조	
						8	○수출이행여부의신고 처리	동법제13조 제8항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16조	
						9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동법제13조 제9항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17조	
						10	○압류등록의 처리	동법제14조			
						11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동법제16조			
12	○등록사항 확인명령 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동법제17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3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의 지정	동 법 제20조			(삭 제)	
	14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가	동 법 제76조			(삭 제)	
	15	○등록번호판 교부대 행자에 대한 개선명 령.지정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동 법 제21조			아. <u>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지정 개선명령. 지정취 소 사업정지명령</u>	동 법 제20조 제21조
	16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동 법 제24조			자. (현행과 같음)	
	17	○자동차의 강제처리	동 법 제26조			차. (현행과 같음)	
	18	○임시운행허가 및 임 시운행허가증과임시 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동 법 제27조			카. <u>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교 부와 반납처리</u>	동 법 제27조
	19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동 법 제28조			타. (현행과 같음)	
	20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동 법 제34조			파. <u>자동차구조 및 장치 변경승인</u>	동 법 제34조
	21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명령. 운행정지 명령및임시검사명령	동 법 제37조			하. (현행과 같음)	
	22	○정비관리자의 선임. 해임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동 법 제38조			거. (현행과 같음)	
	23	○차고시설 확보신고 의 처리	동 법 제39조			너. (현행과 같음)	
	24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 다)의 처리 및 이륜 자동차번호의 지정	동 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u>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 폐지신고를 처리외 번호지정</u>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25	○자동차관리법 제52 조에서 준용하는 다 음사항				나.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에서 준용하 는 다음의 권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가.이륜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관리등	동법 제7조			• <u>등록원부의 비치관리등</u>	동법 제7조
		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동법 제9조			• <u>사용신고의 거부</u>	동법 제9조
		다.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 처리	동법 제13조 제7항			• <u>사용폐지신고의 처리</u>	동법 제13조
		라.이륜자동차 등록사항의 확인명령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동법 제17조			• <u>등록사항의 확인명령</u>	동법 제17조
		마.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	동법 제18조			• <u>사용신고필증 재교부</u>	동법 제18조
		바.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동법 제20조			• <u>(현행과 같음)</u>	
		사.이륜자동차의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동법 제24조			• <u>개선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원상복구명령</u>	동법 제24조 제37조
		아.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제26조			• <u>(현행과 같음)</u>	
		자.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 다)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동법 제34조			• <u>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u>	동법 제28조
		차.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동법 제34조			• <u>구조장치 변경 승인</u>	동법 제34조
		카.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동법 제37조			<u>(삭제)</u>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현행과 같음)				
	2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동 법 제54조				나. (현행과 같음)			
	28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동 법 제55조				다. (현행과 같음)			
	29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동 법 제56조				라. (현행과 같음)			
	30	○자동차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동 법 제64조제2항				마. (현행과 같음)	동 법 제64조		
	3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동 법 제66조				바. (현행과 같음)			
	32	○보고명령 및 검사	동 법 제72조				사. (현행과 같음)			
	33	○단속	동 법 제73조				아. (현행과 같음)			
	34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동 법 제74조				자. (현행과 같음)			
	35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	동 법 제75조				차. (현행과 같음)			
	3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 법 제84조				카. (현행과 같음)			
	3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동 법 제29조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	
										동 법 제29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다.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발급	동법 제26조			다.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동법 제26조
		라.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재교부	동법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삭제)	
		마.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재비치	동법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삭제)	
		바.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반납처리	동법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삭제)	
		사.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동법 제28조			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동법 제28조
	38	○건설기계 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5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가.(현행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개정처리	동법 제3조, 제5조
		다.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	동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 제6조
		라.등록 이전신고 처리	동법시행령 제6조			라.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마.건설기계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마. 등록번호표부착 승인과 표식 및 새김명령	동법 제8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바.등록의 개정처리	동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u>바.등록번호판의 반납</u>	동 법 제9조
		사.건설기계등록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u>사.식별공란 등록번호 호표의 재세김명 령등</u>	동 법 제11조
		아.건설기계 등록원부 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u>(삭 제)</u>	
		자.등록번호표봉인등 의 통지 및 명령	동법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7조			<u>아.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u>	동 법 제8조 의2
		차.건설기계 등록번호 표의 재부착	동법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8조			<u>(삭 제)</u>	
		카.건설기계등록 번호 표의 반납	동법제9조, 동법시행규 칙제19조			<u>(삭 제)</u>	
		타.등록번호표의 새김 명령	동법제11조			<u>(삭 제)</u>	
		파.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동법제8조, 동법시행규 칙제15조, 제16조			<u>(삭 제)</u>	
	39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제16조, 동법시행규 칙제39조, 제40조			자.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동 법 제16조
	40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동법시행규 칙 제17조			<u>(삭 제)</u>	
	41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제17조, 동법시행규 칙 제41조			차.(현행과 같음)	동 법 제17조
	42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처분, 화물운송의 금지	동법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규 칙제91조			<u>(삭 제)</u>	
	43	○보고 및 검사	동법제35조			카.(현행과 같음)	동 법 제35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44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36조			(삭제)	
	45	○과태료부과·징수, 이의신청처리	동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타. (현행과 같음)	동법 제44조
	46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판. (현행과 같음)	
	47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하(생략)	삭도·궤도법 동법제17조 제1항, 제17조의2제1항 동법18조제1항		6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마(현행과 같음) 바.(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하(현행과 같음)	삭도·궤도법 동법제17조, 제17조의2 동법제18조
	48	○도시교통정비촉진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신설) (신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 교통영향평가지침제40조제1항, 제2항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9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신설)			10	다.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신설)			11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
		(신설)			12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바. 시설사용료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준수 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 제4항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제3항 동법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차.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카.사업개선명령 타. 사용명령 파.사업의 양도.양수 · 합병· 상속· 휴지 및 폐지 하. 면허의 취소 거. 과징금 처분 너. 청문 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조합 설립 러.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머.정관변경등의 명령 버. 재원지원, 조합감독 서.공사시행인가.시 설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통보	동 법 제44조 동 법 제45조 동 법 제46조 동 법 제47조 동 법 제50조 동 법 제76조 동 법 제79조 동 법 제77조 동 법 제55조 동 법 제56조 동 법 제58조 동 법 제51조 제59조 동 법 제49조 제3항. 제4항
		(신 설)			13	○기계식주차장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나.기계식주차장검사 필증 및 사용금지 표지의 교부	주차장법제 19조의9제 2항 동법제1 9조의10 제1항

(별표6)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위탁기관

현행				개정안			
일련 번호	단지별	위임.위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일련 번호	단지별	위임.위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부용지방 산업단지	청원군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0조	4	부용지방 산업단지	<u>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u>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대소지방 산업단지	음성군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0조	6	대소지방 산업단지	<u>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u>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근거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점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 제 과〉

【상품권법】 - '99. 2. 5 , 법률 제5,749호 폐지

<보건과>

【마약법】

제55조의3(마약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6조의3(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교육) 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물관리과>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생략)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5 (생략)

② (생략)

제17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등)

제20조 (수질검사 등)

<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소독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철도·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반하는 운송업자에 대하여 가축소유자의 부담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이하생략)

② - ③ (생략)

【수의사법】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가축의 도살등)

제19조(출입·검사·수거)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② - ③ (생 략)

제22조 (영업의 허가)

제23조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제28조 (과징금 처분)

제35조 (시설개수)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제38조 (폐쇄조치)

제43조 (청문)

제47조 (과태료)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등)

제40조 (사용개시)

제41조 (사용약관)

제42조 (시설사용료)

제43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등)

제44조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제45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제46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7조 (사용명령)

제71조 (보고·검사등)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제76조 (면허취소등)

제77조 (청문)

제78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제79조 (과징금처분)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이하“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제19조의10(검사필증의 교부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